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0구합16110 여권상영문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변 론 종 결	2010. 7. 8.
판 결 선 고	2010. 9. 16.

주 문

1. 피고가 2009. 7. 6. 원고에게 한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피고에게 최초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영문성명을 "B"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12. 18. 원고의 신청대로 영문성명이 표기된 유효기간 5년의 일반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여권의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자 2009. 6. 26. 피고에게 다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인 "B"을 "C"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6.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원고의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이 한글이름 "A"과 유사한 발음 표기에 해당되고 해외출입국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영문성명의 표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여권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한글성명인 "A"이 기존 여권상 "B"으로 영문표기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B"을 "D"으로 발음하고 있는 등 위 한글성명 "A"과 영문성명 "B"은 명백히 다른 음역에 있다. 또한 원고는 여권상 영문성명의 발음이 한글성명과 달라 해외여행시 많은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서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감추려 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초 발급된 여권상 영문성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여권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 발급 신청 역시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여권의 재발급에 포함되므로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발급에 관한 각종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법 시행령 제19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 및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 발급은 법 제9조에 규정된 여권의 발급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 제11조의 여권의 재발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권의 재발급에 관련된 규정인 법 시행령 제19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9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피고는 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 즉 '1. 제7조 제1항 각호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권의 재발급 신청시에는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을 첨부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과 동일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비하여, 여권의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유효한 여권을 중복 발급받음으로써 신원확인에 혼선이 생기고 기존 여권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적인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를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여권의 재발급과 관련된 각종 엄격한 제한(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1조 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제1항 각호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 자체의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5조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유효한 여권의 정보 내지 기재사항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여권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유·무효를 불문하고 기존 여권의 정보나 기재사항을 정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맞지 않는다.

(4) 피고의 주장대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 발급 신청도 여권의 재발급 신청으로 보아, 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언제까지나 최초 발급된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과 동일한 영문성명만을 사용하여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로 이미 무효로 된 여권의 정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5) 2009. 12. 30. 신설된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11조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_____

판사 이예슬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판사 이승원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별지

관련 법령

■ 여권법(2009.10.19, 법률 제9799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3. 여권의 명의인의 지문(지문)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제15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사유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1-20

3.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5.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9조(영문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그 여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가 있거나 여권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제18조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
제21조(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외관상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끝.